

감사 결과 (한국발전인재개발원)

1. 감사개요

☐ 감사배경

- (사)한국발전인재개발원(이하 “인재개발원”)의 방만경영, 기강해이 등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가 익명으로 접수(“24.9.4.”)되어 이에 대해 감사실시

☐ 감사기간 : 2024. 9. 23. ~ 10. 11.(12일간)

☐ 처분요구일 : 2024. 12. 6.

2. 감사결과

① 경영 관리 분야

- 인재개발원은 기관 경영평가 없이 남동발전(주) 등 5개 발전사(이하 “발전5사”) 정부경영평가 평균 지급률(168%)에 3%p를 더하여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, 지급 방식도 차등화된 내부기준 없이 일률 지급
- 내부조직평가를 실시하고도 내부평가급을 부서별·개인별 차등 지급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내부평가급 200% 일률 지급
- 복지포인트, 건강검진비, 행사지원비 등 복리후생 경비가 1인당 169만원으로 발전5사 평균(70만원) 대비 약 2.4배로 과다
- 발전5사는 임금피크 시기가 임박한 직원을 인재개발원에 파견(실장급 6명)하고, 인재개발원은 교수로 파견된 직원 27명중 5명(차장급)을 행정부서로 발령

② 인사·총무 분야

- 근태 허위조작, 무단조퇴·외출·지각, 근태불량 등 전직원(92명)의 절반 총 46명의 근태 규정 위반 301건 확인
- 「보상휴가제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휴일근무 시 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평일에 휴가(이하 “보상휴가”)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* 직원 19명이 출장비를 지급받는 휴일근무 실시 후 휴일 근무시간(1,805.5시간)의 1.5배인 2,707.5시간의 휴가 부당 실시
 - * 출장비 미지급 휴일근무 시 평일에 근무시간의 1.5배에 해당하는 휴가 실시
- 「보상휴가제 운영기준」에 따라 시간외 근무(연장·휴일근로)시 ‘보상휴가’를 부여하여야 하나, 특정부서 직원 9명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

③ 재무·회계 분야

- 법인카드사용관련, 분할결제 73건, 유가증권(상품권) 구입 46건, 휴일 사용 65건 등 총 184건의 「법인카드관리지침」 위반 사실 확인
-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, 업무외 목적사용, 참석 인원·사용 목적 부실 기재 등 총 125건의 「업무추진비 및 유관기관 협력비 집행지침」 등 위반사실 확인

④ 교육 운영 분야

- 유사 교육기관(한전 인재개발원 등)의 '23년 교수 1인당 연간 강의시간은 최소 293시간, 최대 462시간이나, 인재개발원의 경우 192.7시간에 불과, 특히 발전5사 퇴직자 채용교수(5명)의 경우 120시간에 불과
- 교수평가시 강의 품질에 대한 평가항목 부재, 「교수평가지침」에 교수평가 결과 미흡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규정

⑤ 기타 분야

- 인재개발원은 중부발전(주)의 감사결과*(22.3월)를 '24.10월 현재까지 미이행

* 인재개발원은 발전5사 대비 노조원 수(38명)가 현저히 적은 바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(연 2,000시간)가 과도하므로 발전5사 평균 수준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

3. 조치내용

- 기관운영 전반에서 심각한 비위 및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
엄중 조치 요구

- 신분상 조치 : 중징계 1명, 경징계 2명, 주의·경고 35건
- 재정상 조치 : 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금액 약 200만원 환수
- 행정상 조치 : 권고 3건 및 통보 6건